

[제20호의2 서식]

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

금액 단위 : 원

재산의 종류 (수량단위)		단위	전년도말 현재		본 년 도 증 감						본년도말 현재		비 고
					증(A)		감(B)		비교증감(A-B)				
			수 량	가 격	수 량	가 격	수 량	가 격	수 량	가 격	수 량	가 격	
1.토지(m ²)	일반토지												
	임 야												
	공공용지												
	소 계												
2 건 물(m ²) .													
3. 공작물(개・m ²)													
4. 기계기구(개)													
5. 입목죽(m ³ ・본)													
6. 선 박(척)													
7. 항공기(대)													
9. 무체재산(건)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

기재요령 : (1) "사유"란에는 공용, 공공용, 공익사업용, 기부자수익용, 기타로 구분하여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사유를
써 넣을 것.

(2) 가격은 국유재산 대장상의 금액을 써 넣을 것.

[제20호의2 서식 부표]

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

재산관리관(분임재산관리관)명 :

금액 단위 : 원

재산의 종류 (수량단위)		단위	전년도말 현재		본 년 도 증 감						본년도말 현재		비 고
					증(A)		감(B)		비교증감(A-B)				
			수 량	가 격	수 량	가 격	수 량	가 격	수 량	가 격	수 량	가 격	
1. 토지 (㎡)	일반토지												
	임 야												
	공공용지												
	소 계												
2 건 물(㎡) .													
3. 공작물(개 · ㎡)													
4. 기계기구(개)													
5. 입목죽(㎡ · 본)													
6. 선 박(척)													
7. 항공기(대)													
9. 무체재산(건)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

기재요령 : (1) "사유"란에는 공용, 공공용, 공익사업용, 기부자수익용, 기타로 구분하여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사유를 써 넣을 것.

(2) 가격은 국유재산 대장상의 금액을 써 넣을 것.